

## 【 2016.07.25(월) 강원일보 】

### 여름철 건설시장 비수기 이번주 공사 발주 단 1건

여름 휴가철과 폭염이 이어지며 건설시장이 비수기에 접어들고 있다. 이에 따라 이번 주 도내에서는 단 1건의 시설공사만 발주될 예정이다.

조달청에 따르면 7월 마지막 주 도내 시설공사 발주물량은 1건 4억8,000만여원에 그쳤다.

한국환경공단 수도권동부지역본부가 의뢰한 '영월군 상수도시설 상동·주천정수장 취수시설 개선공사'가 28일께 개찰이 이뤄질 전망이다. 이 공사의 추정가격은 4억8,700만원이다. 하위윤기자 faw4939@

## 【 2016.07.25(월) 건설경제 】

### 공정위, 하도급대금 미지급 규모 따라 과징금

앞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만큼 과징금도 늘어나게 된다.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한 기술 유용과 보복조치 등에 대해선 최대 5억원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진다.

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.

그동안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은 하도급 대금의 2배에 3~10%의 부과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했다. 그러나 지난 1월 하도급법 시행령이 기존 산정 방식에 법 위반 금액 비율을 곱하고 기존 부과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개정됐다.

이번 개정안에서는 법 위반의 중대성 정도를 3단계로 구분해 부과율을 정했다. 매

우 중대한 위반 행위 60~80%, 중대한 위반 행위 40~60%, 중대성이 약한 위반 행위 20~40%이다. 중대성은 법 위반행위 유형, 피해 수급사업자의 비율, 수급사업자의 경영악화에 미친 영향 정도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. 최종 산정 과징금이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보다 적으면 불법적 이익을 과징금 기본 금액으로 산정한다.

법 위반 금액 비율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 부과하는 정액 과징금도 신설됐다. 정액 과징금은 기술 유용, 보복조치 등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의 경우 3억원 이상 5억원 이하, 중대한 위반 행위는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, 중대성이 약한 위반 행위는 2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다.

박경남기자 knp@